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9. 29 선고 2021나119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9. 29 선고 2021나1195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4. 7 선고 2019가합10385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백수기

피고, 피항소인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웅

변론종결 2022. 7. 21.

판결선고 2022. 9. 29.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4. 7. 선고 2019가합10385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D과 피고 B 사이의 별지1 기재 금원지급행위 및 D과 피고 C 사이의 별지2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39,700,000원, 피고 C은 430,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D과 피고 B 사이의 별지1 기재 금원지급행위는 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D과 피고 C 사이의 별지2 순번 1 내지 3번 기재 합계 30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는 1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7,000,000원, 피고 C은 1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들에 이 법원에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D은 피고 C이 E를 고소하는 경우 공범인 자신도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금원을 증여하였다. 이는 원고에게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은 위 금원을 증여받을 당시 D의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경제력이 부족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1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2 기재 금원 중 2014. 10. 24.자 순번 1 내지 3 기재 합계 3억 원 지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의 “증거가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법원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E는 이 사건 편취행위로 인해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진술서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순영, 판사 김범진, 판사 이강은

별지